KB 다이렉트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4.10) 약관

★ KB 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그린 <GREEN 지구 캠페인> KB손해보험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종이약관 대신 모바일약관으로 시작하세요.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특별약관

제1장 상해 관련 특별약관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4.10) 약관



제1장 상해 관련 특별약관

1. 반려동물양육자금 I (일반상해사망)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반려동물양육자금 I (일반상해사망)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동물양육자금 Ⅰ (일반상해사망)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

-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3~79%)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 시 장해지급률 계산

- ① 보험가입 전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가 있었던 피보험 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다리의 해당관절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지급률 30%)
 - ⇒ 보험가입 후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30%)에서 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 (5%)을 차감한 지급률 25%(=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②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15%)인 상 태에서 이후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지급 률 35%)
 -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图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제2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4.10) 약관



제2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C Al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는 이 보험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10세 (120 개월)을 초과하는 개(犬)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 (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5.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반려동물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로인한 증상,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부 가 설 명	음식물		

부 가 설 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 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용 어	정 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의 "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 련 법 규	(대통령령 제31930호)
221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 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하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 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

제 도

성

특

약

바

관련법규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 련 법 규 민법

·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4조(보험금의 청구)

-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료비 영수증(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진료기록부(수의사가 작성 한 진료차트), X-ray 등 방사선 사진을 찍은 경우 해당 사진(촬영 날짜 및 시간 필수)
 - 5. 의료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 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 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바

a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용 어 풀 이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 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다른 계약이 없을 때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관 련 법 규 생법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 았을때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图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 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유 의 사 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이 청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 어 풀 이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 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4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나이 등)

-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만나이는 계약일 현재 반려동물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

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나이 및 품종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및 품종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의 나이 및 품종이 정정되기 이전에는 "나이 및 품종이 정정되기 전에 적용된 보 험요율"의 "나이 및 품종이 정정된 후에 적용해야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 계약해당일 계산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2022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4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1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용 어 풀 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약관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④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5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7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8조(보험계약 의 성립)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 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용 어 풀 이 부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1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약관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3조(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 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ㆍ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 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 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2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용 어 풀 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 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22조(준용규정)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6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의료비의 보장개시일(이하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하의료비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의료비보험금의 총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1일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1일당 보	연간 총	
구분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상한도액
실속형	1일당 10만원 한도	1일당 150만원 한도	1,000만원
기본형	1일당 15만원 한도	1일당 200만원 한도	1,000만원
고급형	1일당 30만원 한도	1일당 250만원 한도	2,000만원

예 시 의료비보험금의 계산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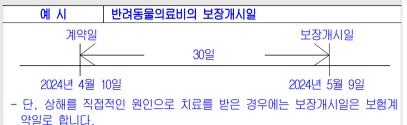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1만원, 기본형 가입 기준

예시①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30만원
- ·지급금액 = {(30만원 1만원) x 9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예시(2)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 221만원
 - ·지급금액 = {(221만원 1만원) x 9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198만원
- ③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 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5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바

a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2.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용어풀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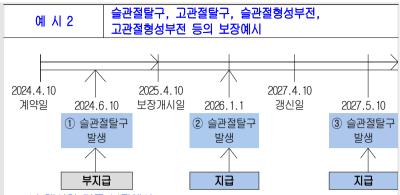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강아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슬관절/고관절 탈구의 보장개시일(이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3년 갱신형 기준 보장예시
 - 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과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케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a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및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 신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치과/구강질환)(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치과/구강질환의 보장개시일(이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과질환(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 포함) 또는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모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제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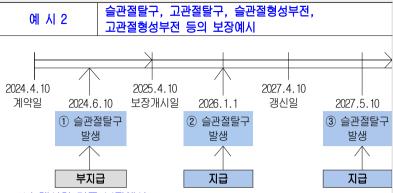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및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 신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슬관절/고관절 탈구의 보장개시일(이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 의료비 또는 치과/구강질환의 보장개시일(이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과질환(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포함) 또는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3년 갱신형 기준 보장예시
 - 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제1항의 경우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단,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바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

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및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 신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 (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MRI/CT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MRI/CT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

금을 제외한 금액을 MRI/CT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 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 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MRI/CT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비보험 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시 MRI/CT보험금의 계산

[MRI/CT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MRI/CT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100만원 기준

예시(1)

- ·MRI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7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75만원 15만원) x 90%, 100만원} 중 적은 금액 = 54만원 예시②
 - ·MRI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1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15만원 15만원) x 90%, 100만원} 중 적은 금액 = 10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MRI/CT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MRI/CT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7.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 연간 2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의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자기공명영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 자기공명영상(MRI) :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영상진단법
- · 컴퓨터단층촬영(CT) : x선을 투과시켜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영상을 얻는 영상진단법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바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6.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백내장/녹내장 수술, 연간 1회한) (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백내장/녹내 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백내장/녹내장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백내장/녹내장수술을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백내장/녹내장

- 수술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 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 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 동물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 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 립니다.

예 시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의 계산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50만원 기준

예시(1)

- · 백내장/녹내장수술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50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200만원
- ·지급금액 = {(250만원 200만원) x 90%,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5만원 예시②
 - · 백내장/녹내장수술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350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200만원
- ·지급금액 = {(350만원 200만원) x 90%,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백내장/녹내장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백내장/녹내장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5.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7.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 연간 2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백내장/녹내장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백내장/녹내장수술"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백내장/녹내장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정체 유화술, 수정체 낭내 적출술, 녹내장 수술 등의 수술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

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 연간 2회한) (강아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이물 섭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에 해당하는 치료를 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물제거(내시경)과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를 동일한 날에 받은 경우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 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 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지급횟수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 지급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2회를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보장한도
이물제거(내시경)	이물제거를 목적으로	부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금	내시경을 받은 경우	_ 포함/[립급학의 100/6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이물제거를 목적으로	부험가입금액의 10%
보험금	구토유도약물을 받은 경우	- 보임가입금액의 10%

예 시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의 계산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200만원 기준

队队

- · 이물제거(내시경)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1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 지급금액 = {(215만원 15만원) x 9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180만원
-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20만원 기준

以的

- ·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20만원} 중 적은 금액 = 2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5.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또는 「6.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백내장/녹내장수술, 연간 1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은 지급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이물제거(내시경)"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이물제거(내시경)"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위장 등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동반하지 않고 내시경 및 내시경포셉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위장 등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및 내시경을 동반하지 않고 구토유발을 목 적으로 한 약물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료비 영수증(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진료기록부(수의사가 작성 한 진료차트), MRI, CT, 방사선 촬영 등 영상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 날짜 및 시간 필수)

- 이물제거(내시경) 시행한 경우: 이물제거(내시경) 처치가 명시된 진료비 영수 중(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내시경영상검사결과지 등
-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시행한 경우: 구토유도약물 처방이 명시된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및 수의사처방전
- 5. 의료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 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 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약물치료, 연간 6회한) (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약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특정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약물 치료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정약물치료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 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6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시 특정약물치료보험금의 계산

[특정약물치료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특정약물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10만원 기준
- 侧人(1)
 - · 특정약물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5만원 15만원) x 9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9만원 예시②
 - · 특정약물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1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5.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또는 「6.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백내장/녹내장수술, 연간 1회한)(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또는 「7.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 연간 2회한)(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토포인트(Cytopoint), 트릴로스탄(Trilostane), 피모벤단(Pimobendan), 크리스데살라진(Crisdesalazine)(제다큐어) 또는 경구 항암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 사이토포인트(Cytopoint)** : 아토피 등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트릴로스탄(Trilostane) : 쿠싱증후군 등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피모벤단(Pimobendan) : 심장질환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크리스데살라진(Crisdesalazine)(제다큐어) : 인지기능장애 치료목적 성분 약물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료비 영수증(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진료기록부(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차트), MRI, CT, 방사선 촬영 등 영상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날짜 및 시간 필수), 특정약물치료에 해당하는 약물이 명시된 수의사처방전
 - 5. 의료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 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 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

- 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재활치료, 연간 5회한) (강아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재활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특정재활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재활치료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정재활치료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 비보험금을 차강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5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시 특정재활치료보험금의 계산

[특정재활치료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특정재활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5만원 기준
- **예시(1)**
 - · 특정재활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0만원 15만원) x 90%, 5만원} 중 적은 금액 = 4만 5천원 예시②
 - · 특정재활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5만원} 중 적은 금액 = 5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특정재활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특정재활치료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5.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또는 「6.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백내장/녹내장수술, 연간 1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또는 「7.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 연간 2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또는 「8.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약물치료, 연간6회한)(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재활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한 수중 러닝머신 치료, 저주파자극치료, 초음파치료, 체외충격파 또는 플라즈마 물리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료비 영수증(특정재활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명이 명시된 치료비 세 부내역 포함), 진료기록부(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차트), MRI, CT, 방사선 촬영

- 등 영상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 날짜 및 시간 필수)
- 5. 의료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 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 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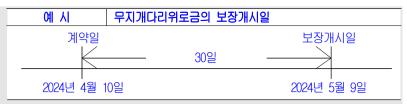
제9조(준용규정)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0. 무지개다리위로금(강아지, 사망)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무지개다리위로 금의 보장개시일(이하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사망한 경 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무지개다리위로금(강아지, 사망)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무지개다리위로금(강아지, 사망)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 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실손)(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을 제5항에 따라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제1항의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은 총 장례비용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동물장묘업자가 제공하는 장례확인서(동물장묘업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대상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장례서비스 이용일자, 화장서 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내역, 비용 등 포함)
- 5. 장례비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으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20만원 초과)(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부 가 설 명

- 핵연류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동물장묘업자가 제공하는 장례확인서(동물장묘업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대상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장례서비스 이용일자, 화장서 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내역, 비용 등 포함)
- 5. 장례비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으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3.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50만원 초과)(강아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이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동물장묘업자가 제공하는 장례확인서(동물장묘업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대상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장례서비스 이용일자, 화장서 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내역, 비용 등 포함)
- 5. 장례비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으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4.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70만원 초과)(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이 7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제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동물장묘업자가 제공하는 장례확인서(동물장묘업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대상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장례서비스 이용일자, 화장서 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내역, 비용 등 포함)
- 5. 장례비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약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으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5. 반려동물배상책임(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 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 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 (犬)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10 세(120 개월)을 초과하는 개(犬)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 하는 개(犬)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 (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 하는 개(犬) 5.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상 해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가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배상책임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 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 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

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 상책임
 -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 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2. 가입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3.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2호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반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5.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6.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에서 정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회사는 피보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의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당)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써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한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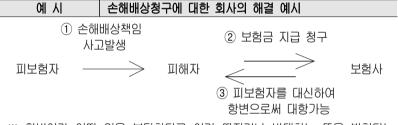
제12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 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따라 증가된 손해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 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 나 대행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상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용 어 풀 이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제15조(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 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 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관 련 법 규 상법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 나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 외사가 전자문서도 안내하고사 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저영합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7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 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용 어 풀 이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19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 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 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 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4조(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2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7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②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6.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강아지)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반려동물 위탁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에서 정하는 동물위탁관리업자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피 보험자의 입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제1항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 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시 수탁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하며 추가 식대, 용품 구매 등의 비용은 제외한 기본 비용에 한합 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국가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국가동물 미등록한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6.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및 동물관리위탁업자가 제공하는 계약서(위탁관리업소 등록번호, 업소명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동물 종류, 품종, 나이, 서비소 기간, 비용 등 포함)
 -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위탁비용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

반 려 동 물

상

약

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